



2022-07호

07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3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8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2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14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15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9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
- 24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 27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31 인천광역시의회, 제9대 인천시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33 경기도의회, G20 각국 중견 정책담당자, 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공식 방문
- 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 38 전라북도의회, 중국 주광주 총영사 전라북도의회 방문



최근 제·개정 법령

- 4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4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4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4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53 「철원군의회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관련 질의
- 57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관련 질의
- 60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질의
- 6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질의
- 67 「지방자치법」 관련 질의
- 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질의
- 75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질의
- 7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6.] [부산광역시조례 제6711호, 2022. 7. 6., 제정]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 및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

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요구
4.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간 업무의 조정
6.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정보통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연구
2. 정보통신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발전· 확산 및 지원

5.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제12조(연구개발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활용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화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가 원활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4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 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

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 및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지원
4.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7.] [부산광역시조례 제6710호, 2022. 7. 6., 제정]

이 조례는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과 부산시민,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재투자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공금융”이란 관내 저신용자,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회적 혁신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해 저금리 및 무이자 대출, 저배당 또는 무배당으로 자금을 투자 및 융자, 기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공공금융회사”란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의 기금재원으로 지역공공금융을 수행하는 공공금융 회사를 말한다.
3. “지역순환경제”란 지역 경제권역 내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연계되어 지역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말한다.
4. “지역재투자”란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공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관리·감독·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4년마다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공금융 재원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공공금융 투·융자에 관한 사항

3. 금융배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공공금융의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은 공모,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출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출자를 할 때에는 제6조의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제5조(회사설립) 시장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금융 회사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출자기관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및 기본 계획 수립 실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공공금융 출자규모, 출자대상 및 적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공금융 투·융자 기준, 범위,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공금융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시민이 대부분 지분을 소유한 금융기관 임직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디지털경제혁신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4. 금융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지역공공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공금융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금융기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신용보

증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공금융회사 설립 및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6.] [부산광역시조례 제6712호, 2022. 7. 6., 제정]

이 조례는 부산시민이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전자지갑으로 디지털시민증을 발급받아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편의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인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징인이 임의적인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어렵게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분산신원증명(DID : Decentralized Identifier)기술”이란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한 시스템이 증명과정을 대신하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한 디지털화된 신원증명 또는 신원인

증 체계를 말한다.

3. “통합전자지갑(B-Pass)”이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신원증명,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시 플랫폼을 말한다.
4. “디지털시민증”이란 분산신원증명기술로 통합전자지갑에 탑재한 신원증명으로써 소유권을 생성, 제시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 간의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공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통합전자지갑에 신원을 증명하는 디지털시민증 발급을 돕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

진다.

② 시민은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시민증 이용계획 수립) 시장은 디지털시민증의 신원증명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과 편의 제공을 위한 이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디지털시민증의 기능) 모바일 블록체인 통합전자지갑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부산시민카드는 주민등록 인증 및 연계 행정서비스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2. 모바일가족사랑카드는 다자녀 정보와 연계하여 발급되어 혜택을 주는 기능을 한다.
3. 구·군민카드는 시민의 구·군 주민등록지 인증을 통해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4. 임산부카드는 간편한 임산부 자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복

지지원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

5. 청소년카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신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카드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및 가맹점 할인 등에 자격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7. 청년카드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 지원 서비스 자격 확인 간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활동 등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

8. 그 밖에 신원증명 확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이 필요한 경우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제8조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스스로 디지털시민증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시민증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계성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7.] [부산광역시조례 제6710호, 2022. 7. 6., 제정]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연구”란 경남지역 여성의 역사·생애·문화·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구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여성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
2. 경상남도 여성사 편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상남도 여성사 발굴 및 보존·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연구 결과물의 활용 등)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경상남도와 공유하며,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에 대한 경상남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2. 7. 19.] [경기도조례 제7457호, 2022. 7. 19., 제정]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강화 및 복지증진과 유기동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유기동물”이란 소유자가 없거

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 돌보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반려동물 종합관리,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파악이나 홀로 사는 노인 사망 후 유족들의 소유권 포기 등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

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관리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 및 교육
4.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 범위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6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
-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 23.]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008호, 2022. 6. 23., 제정]

이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증진·구제·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권리보장”이란 아동인권의 보장, 아동권리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아동권리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아동옴부즈퍼슨의 구성·운영

제3조(아동옴부즈퍼슨의 구성·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권리 보장과 실제적인 아동참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의 정수는 2명으로 한다.

③ 아동옴부즈퍼슨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아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직무의 독립성) 아동옴부즈퍼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와 권한) ①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제출한 아동권리 침해사안의 채택·조사·처리
2.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평가
3. 제1호에 따른 채택·조사·처리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4. 아동인권에 대한 자문·교육·상담 등
5. 그 밖에 아동인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된 사항
2.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관할) 아동옴부즈퍼슨이 제5조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 및 군 소속기관
2.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군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7조(의무)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 대변인으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군민은 아동옴부즈퍼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동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고충민원의 신청목적 및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거짓이거나 고충민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아동옴부즈퍼슨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직접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④ 아동옴부즈퍼슨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접수된 고충민원 또는 아동권리 침해사안을 조사할 경우에는 군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자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 및 의견표명)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사항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에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2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제1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군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군은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아동옴부즈퍼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아동음부즈퍼슨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표) ① 아동음부즈퍼슨은 제1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제13조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아동음부즈퍼슨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아동권리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제15조(아동권리보장위원회 구성·운영)

① 아동음부즈퍼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

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음부즈퍼슨으로 한다.

1. 아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시민사회 단체대표
4. 아동·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인권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기능) 위원회는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음부즈퍼슨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사항
2. 아동음부즈퍼슨의 정책권고·의견 표명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음부즈퍼슨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

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아동옴부즈퍼슨에 대한 협조·지원

제22조(사무소) ① 군수는 아동옴부즈퍼슨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소에는 사무소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옴부즈퍼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아동옴부즈퍼슨의 참여 확대) 군수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아동옴부즈퍼슨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아동옴부즈퍼슨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운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7. 8.]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51호, 2022. 7. 8., 제정]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함안 군 승마체험학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체험학교”란 함안군 승마공원 안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교육장·식당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승마체험학교의 시설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함안군 승마장”이란 함안군 승마공원의 승마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체험학교(이하 “체험학교”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함안군 승마장 이용증진을 위한 숙박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2. 체험학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3. 그 밖에 체험학교의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휴장일 등) ① 체험학교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료) ① 체험학교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시설사용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

지 함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학교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함안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참가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2. 함안군 승마장이 운영하는 승마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험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감경대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9조의 각 호에 따라 사용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70퍼센트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50퍼센트 반환
4. 사용당일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 불가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

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험학교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 소음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이나 물품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험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학교를 위탁할 경우 체험학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940호, 2022. 7. 15., 제정]

이 조례는 화성시 지질유산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추진 과정 및 지질유산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질유산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관리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질유산이 법 제36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질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지속적인 지질유산의 보전 및 관리

6. 그 밖에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① 시장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해설사 자격 취득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의 양성·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주민협의체) 시장은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인천광역시의회, 제9대 인천시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경기도의회, G20 각국 중견 정책담당자, 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공식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라북도의회, 중국 주광주 총영사 전라북도의회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제9대 인천시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타지역과의 교류 및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울산·부산 등
해양 우수 지역 방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중심 의회 구현과 고품질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연수를 떠난다.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을 위한 정책역량 및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연수는 올 상반기 선거 일정, 하반기 연속적인 회기 집중 등으로 별도 교육일정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279회 임시회’ 종료일(7월 19일) 직후 시의원의 정책역량 개발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발의 및 심의 등 맞춤형 의원 직무교육과 함께 인천형 해양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자 울산·부산·여수·광양 등 국내 해양도시 개발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학습도 포함됐다.

더불어 울산·부산시의회 의장단, 부산시 남구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 해양도시 개발사업 관련 간담회도 총 4회 실시하는 등 이들 기관과의 향후 정책공조 및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우수 항만 관계기관과의 현장 설명회(5회)도 준비돼 있어 앞으로 항만도시 인천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우수 사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을 비롯한 시의원, 인천시장, 구청장(군수), 구(군)의원 및 교육감 등의 공약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토론시간을 별도 편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는 초선의원이 35명으로 전체 의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에 집중된 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시 집행부와의 정책공조 및 협치를 위한 시의회 정책역량 제고는 물론 고품질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전문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G20 각국 중견 정책담당자, 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공식 방문

지방의회 역사 및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 살펴

호주, 인도 등 G20 회원국과 알제리아, 카메룬 등 개발도상국의 중견 정책담당자들이 15일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약상,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마루 개관(3월31일) 이래 외국인 관람객의 단체 방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호주, 튀르키예, 인도, 인도네시아 등 G20 4개 회원국 연수생 6명과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불가리아, 카메룬, 이집트, 에티오피아, 조지아,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케냐,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등 16개 개발도상국 연수생 27명 등 총 20개국에서 온 33명의 외국인 관람객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주관하는 'G20 글로벌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견학은 정책담당자들이 자국 정부

기관의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수생은 먼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들은 뒤, 경기마루에서 전시를 통해 경기도의회 66년 역사와 의정 성과, 경기도의 발전상을 살펴봤다.

연수생들은 특히 보조 검색도구인 ‘아카이브 큐브’를 조작해 대형 미디어 테이블에서 주요 조례 및 의정성과, 의회 상징물, 변천사, 친선교류 등의 주요 의정정보를 화면으로 열람하며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력을 의정관에 효과적으로 도입한 데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경기마루 안에 마련된 ‘본회의 체험관’에서 AI 의장의 진행에 따라 ‘도의회 선서’, ‘개회선포’, ‘제안설명’, ‘찬반표결’ 등의 모의 본회의를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진행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일일 도의원’ 체험을 마친 연수생들은 본회의 체험관 운영 이후 최초로 수료증을 받으며 견학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소속 재무담당관 토타하일 칼리룰라(Totakhail Khalilullah)은 “한국 IT 기술력의 수준을 실감할 수 있는 선진의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너무나 뜻깊다” 라면서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비롯한 기본소득 조례와 사업을 여건이 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시행해 보고 싶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은 “G20 각국 정책담당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접하며 경기마루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지방의회와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 외국인 대상 관람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관람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수생들은 외교·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들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학습해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G20 글로벌 연수과정에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입국해 21일까지 15일 간 국내 주요 공공사업과 참가국의 경제·사회 발전 현황을 비교·분석하며 국가 간 협력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마루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증강현실(AR) 등의 다양한 기술을 도입한 기획전시관, 본회의 체험관, 전문도서관으로 의회 1층 1,698㎡ 규모로 조성됐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관람료는 무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15일 제77회 임시회 본회의서 현 정부 계획에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
세종시의회 여야 첫 협치 안건...대통령실 등 기관 10여곳에 전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에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임시집무실 활용-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독립 건물 신축’을 추진키로 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무산 보도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기존 임시집무실 활용’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기대가 한순간에 상실감으로 바뀌었다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와 대통령에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가 균형 발전 부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로드맵 제시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기관 10여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회

중국 주광주 총영사 전라북도의회 방문

도의회 의장단 예방...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상생발전 협력 다짐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장칭강 총영사를 비롯한 주안평 영사, 장이판 영사주재관은 15일(금)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칭강 총영사 일행은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예방하여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를 축하하고, 양국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양국의 교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며,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고 밝혔다.

이에 장칭강 총영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있지만 다양한 국제교류방안 개발을 통해 전북도의회와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강소성 인대를 비롯한 운남성 인대 등과 경제·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중단된 상황이다.



최근 제·개정 법령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1 제정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 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

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 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제정]

1 제정이유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그런데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일 발생량 3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다.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제7조).

라.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 등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1호, 2022. 6. 1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낮아진 취업률과 경기 침체의 악조건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창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조 중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창조기업의“를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대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시, 천안시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구가 협의한 경우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군·구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 중 “대도시권”을 “대도시권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도시권“을 “대도시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군·구가 분담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를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관련 질의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관련 질의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질의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질의
- 「지방자치법」 관련 질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질의
-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질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176, 2022. 6. 22., 강원도 철원군]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에서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서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에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제1호), 예산의 심의·확정(제2호), 결산의 승인(제3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인바 재단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석’의 의미를 물리적 공간으로써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물리적인 회의장이 아닌 회의에의 참석, 즉 심의 표결 등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절차에 참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출석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에서 표결방식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표결방식이나 투표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의사자율권에 해당하여 입법형성의 자유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따른 출석의 의미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위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에 대한 사항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재량에 따라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가 행정사

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 및 의견 진술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회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재난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고 및 의견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질의요지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

[의견22-0116, 2022. 6. 22., 경상남도 김해시]

의견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김해시조례”라 한다) 제28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5년마다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같은 항이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만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비롯하여 각종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김해시조례 제28조제4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검토한다”나 “검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통상적으로 권한 주체의 행위를 기속하거나 제한하기보다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거나 확인하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김해시조례 제28조제4항의 입법취지가 “효율적인 수도요금 관리

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도모” 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항은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만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김해시조례의 다른 규정 등 관련 자치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김해시조례 제28조제4항을 검토주기를 5년으로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될 만한 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김해시조례 제28조제4항은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토지공여자나 소속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토지공여자나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155, 2022. 7. 6., 경기도 시흥시]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이나 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제1호)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제2호),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제7호) 등에 사용되는 경우

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예외로서 감면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의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정도를 구분하여 면제와 감경으로 나누고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안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범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 1. 17. 신설되었고,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제7호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2017. 12. 29. 개정되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는 감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도록 하면서 감경의 대상이 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사용료가 감경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 규정의 취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감경 대상을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질의요지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에서는 축사 관련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중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

[의견22-0168, 2022. 7. 7., 전라남도 장성군]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장성군조례”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조례 제19조의4 및 제20조의4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나목·다목·라목에 해당하는 “축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20조의4제1항1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는, 위 조례의 규정과 함께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령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성군수로부터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성군조례로 정하고 있는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조례 제19조의4제1호나목에 따르면 “축사 관련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의 정의에 “증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성군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의 부칙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다.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한 의장방침에 따라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을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22-0192, 2022. 7. 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한 의장방침에 따라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을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서는 시·도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이하 “의

원발의”라 한다)할 수 있는바, 귀 기관에서는 같은 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의회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안을 의원발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의원발의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그대로 의결·재의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기구의 종류 및 업무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원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회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권 및 조례안 제안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의 기본적 권한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집행기관 소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의원발의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

까지 형식적·기계적으로 조례안 제안권의 소재를 따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이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의 의원발의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두는 의회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법령이나 자치입법(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등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이하 “부칙타법폐지방식”이라 한다)과 폐지를 위한 법령등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부칙타법폐지방식을 통한 법령등의 폐지는 같은 형식의 법령등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 형식에 따라 제정권자 및 제정 요건·절차가 달라지므로 다른 형식의 법령등을 부칙타법폐지방식으로 폐지하게 되면 제정권자가 아닌 자가 법령등을 폐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등의 폐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폐지 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지하는 결과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권한을 갖는 규칙을 지방의회가 폐지하는 결과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정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회규칙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위반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 질의 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3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의회규칙의 제정 절차·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자인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방침만으로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 를 의회규칙의 제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독립제가 아닌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의사는 “본회의 의결” 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 방침에 따라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을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제2항 관련

질의요지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173, 2022. 7.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그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수료 징수 및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규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부산진구조례안”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

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수료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수수료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는 예측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항인바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조례안에 분뇨의 수입 및 운반 수수료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군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 현 훈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 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8조 등 관련

질의요지

부여군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 현 훈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의견22-0163, 2022. 7. 12., 충청남도 부여군]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할 때에 조례나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무의 위탁은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자가 대외적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있어 지방의회의 관여나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의 근거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례나 규칙이 아닌 훈령으로 위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의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훈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질의요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22-0186, 2022. 7.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미추홀구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위원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후 임기종료 3개월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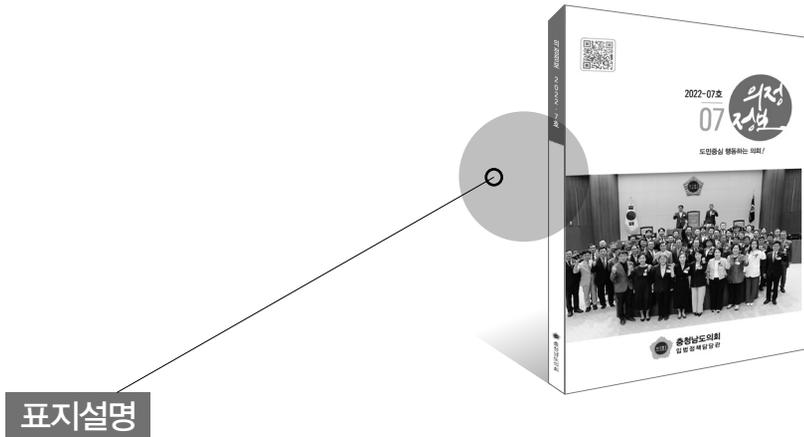
그리고 미추홀구조례(2020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 1613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된 본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위촉을 희망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달리 2년 단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서 불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는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새

로운 법령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허용되고,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위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 등에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미추홀구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바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개정은 특정 소수인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소급입법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과 같은 조례 개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대표 사명감 잊지 않을 것” 제12대 충청도의회 개원

제12대 의회 개원식 개최... 도민 권익신장 및 지역사회 발전 위한 직무 수행 다짐

충남도의회는 4일 제12대 의회의 개원식을 열고 충남의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해 화합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길연 의장 등 12대 의원 48명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도·교육청 간부 등 12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조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다르지만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동행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며 “충남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되,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당적을 초월해 마흔여덟 명의 의원이 도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남의 도약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도의회는 개원식 이후 의회 1층 로비에서 축하연을 열고 성공적인 12대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와 사무처, 집행부 모두 화합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의정정보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2-07호

- 발행일 | 2022년 7월
-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락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